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 : 윤상현・홍준표・유경준

구자근 · 김성원 · 허은아

박대수 · 윤영석 · 엄태영

이헌승 · 안병길 · 이주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를 "조정대상지역은 동(행정동을 말한다)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및 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

다.

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동 단위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 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로 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 여야 한다.

개 아 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조정대상 지역은 동(행정동을 말한다) 단 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로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분기 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 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 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후 조정 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